

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8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	법 제82조제1항제1호	300	500	1,000

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			
나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2호	300	500	1,000
다. 조합(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)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1호	200	300	500
라.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2호	200	300	500
마.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3호	200	300	500
바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4호	200	300	500
사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5호	200	300	500